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목 차>

### 1.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유원규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5급
	국장	이형주		연락처	02-2100-2992
	과장	이진수		이메일	2081042@mail.go.kr

2021. 12. 24.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12.24 ~ 2021.12.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과거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  <input type="checkbox"/>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신업 감독규정 §25의4)  <input type="checkbox"/>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  <input type="checkbox"/>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											
	7.규제내용	영세한 중소기업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조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신용카드사</td> <td>전업 8개사 (겸영은행 포함 19개사)</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신용카드가맹점</td> <td>약 290만개</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카드사	전업 8개사 (겸영은행 포함 19개사)	이해관계자	신용카드가맹점	약 290만개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카드사	전업 8개사 (겸영은행 포함 19개사)											
이해관계자	신용카드가맹점	약 290만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우대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644,798.18		3,644,798.18								

		피규제자 이외		3,644,798.18	-3,644,798.18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644,798.18	0	460,625.29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p> <p>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8 이하</p> <p>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3 이하</p> <p>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 이하</p> <p>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6 이하</p>	<p>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p> <p>-----</p> <p>-----</p> <p>-----</p> <p>-----.</p> <p>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p> <p>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p> <p>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p> <p>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과거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

○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를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

□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

○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를 조정을 추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우대수수료를 현행 유지
	내용	우대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안
규제대안1	대안명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를 조정
	내용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산정된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불가
규제대안1	현행 적격비용 및 우대수수료 적용 법령 체계에 부합하며, 영세가맹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상공인연합회 (가맹점단체)	'21.10.26일 관계기관 회의 '21.12.22일 업계 면담	수수료 부담여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	'21년 수수료 개편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
카드사	'21.10.14일 CEO 간담회 '21.10.26일 관계기관 회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신중입장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대형가맹점 보다 영세한 가맹점 위주로 부담 합리화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21년 수수료 개편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
카드노조	'21.11.17일 사무금융노조 간담회	카드업계와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21년 수수료 개편안에 반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소비자 단체)	'21.10.26일 관계기관 회의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TF 구성 등)	'21년 수수료 개편안에 과도한 소비자 혜택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 명시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체 평가) 규제대안 1은 현행유지안에 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비용체계에 부합하고,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
-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적격비용 기반 우대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우대수수료율 수준만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력 등의 소요가 없어 비용 효과 측면에서도 우위

○ (세부 평가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수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하며, 적격비용은 공정·타당하게 산정되어야 함

\*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를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ii)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산정된 적격비용 경감 범위 내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0.69조원이며

- 다만, '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연간 약 0.22조원)을 감안할 경우,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추가 경감 가능 금액은 0.47조원임

\*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2차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토록 대상 확대(19.4월~) 등

**<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

- ①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 ②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 ③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이내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추진

* (연매출 3억이하)	'18년 0.8%	→	'21년 0.5%
(연매출 3~5억)	'18년 1.3%	→	'21년 1.1%
(연매출 5~10억)	'18년 1.4%	→	'21년 1.25%
(연매출 10~30억)	'18년 1.6%	→	'21년 1.5%

→ (결론) 현행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적격비용의 경감 요인이 명확한 이상 **현행유지안은 적용하기 어려우며,**

- 이해관계자 의견 및 당정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우대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동일하게 경감하는 규제대안 2보다는 **보다 영세한 가맹점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규제대안 1을 선택함이 보다 타당함

### 3. 규제목표

- 여전법상 적격비용 원칙에 맞게 공정·타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 **보다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추진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한 바 **충분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하였으며

\*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ii)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인 카드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21.5월~12월), 가맹점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들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였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모든 신용카드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인 카드사는 중소기업에 미해당

## ○ 기타 고려사항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우대수수료 조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에서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의무화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인 바 카드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해당함

### - 일몰설정 여부

상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는 무관하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법정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 처리	법정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미국, EU국가 등은 카드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여 규제 중

\* 해외 카드수수료는 정산수수료, 매입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등으로 구성

#### ○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644,798.1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44,798.18		3,644,798.1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3,644,798.18	-3,644,798.18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644,798.18	3,644,798.18	
기업순비용		3,644,798.18	연간균등순비용	460,625.29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비용을 산정하였고
- 수수료율 조정 및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카드사,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루어졌음
- 적격비용 산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바 카드사 및 가맹점은 감독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카드업계, 소비자단체,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22.1분기 중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바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 참고 : 업계 의견

- (카드업계) 수수료율을 조정시 대형가맹점보다는 영세한 가맹점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 / 제도개선 TF 구성을 요구
- (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영세·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보다 영세한 가맹점(예 : 연매출 3억 이하)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
- (소비자단체) 수수료율 조정시 소비자 혜택 관련 개선방안 제안 (TF 등)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규제로서,

카드사들은 여전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상한이 조정되면 이를 단순히 가맹점에 통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바 집행 가능성이 충분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운영중인 우대수수료 체계 하에서 적용 수수료 수준만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 등이 소요되지 않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21.5월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서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한 비용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정·타당한 적격비용 산정 및 반영을 위한 업계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음

○ '21.10월에는 카드업계·소상공인단체·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 과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반영하였음

□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 이해관계자 건의에 따라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2. 향후 평가계획

□ 차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기('22.1.31.)에 맞추어 감독규정 개정 완료 및 인하된 수수료 적용을 위한 준비 추진

○ 여신협회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카드사가 수수료 인

## 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

□ 또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바와 같이,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를 '22.1분기 중 구성하여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①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방지

②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 검토

### 3. 종합결론

□ 법적인 근거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규제대안 1은 타당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44,798.18		3,644,798.1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3,644,798.18	-3,644,798.18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644,798.18	3,644,798.18	
기업순비용		3,644,798.18	연간균등순비용	460,625.29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신용카드사
활동제목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비용항목	기타
비용	3,644,798,184,14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3%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25%p)를 곱하고, 연매출 3~5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2%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15%p)를 곱하고, 연매출 5~1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5%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1%p)를 곱하고, 연매출 10~3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05%p) 곱해 합산 (61439800000000*0.003+30967300000000*0.0025+25915200000000*0.002+13457300000000*0.0015+37710000000000*0.0015+18948800000000*0.001+42778200000000*0.001+17158600000000*0.0005)
근거설명	○ 회계법인의 산정 결과, 금번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대상 금액 약 4,700억원 이내에서 우대수수료 조정에 활용 - 수수료 경감분과 관련하여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3%p(체크카드 0.25%p)를 곱하고, 연매출 3~5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2%p(체크 0.15%p)를 곱하고, 연매출 5~1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5%p(체크 0.1%p)를 곱하고, 연매출 10~3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p(체크 0.05%p)를 곱하여 더한 만큼 수수료 수입이 연간 감소

②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영세 소상공인
활동제목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편익항목	수수료 부담 완화
편익	3,644,798,184,14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p>산식</p>	<p>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3%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25%p)를 곱하고, 연매출 3~5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2%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15%p)를 곱하고, 연매출 5~1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5%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1%p)를 곱하고, 연매출 10~3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p(체크카드 매출액에는 0.05%p) 곱해 합산  <math>(61439800000000 * 0.003 + 30967300000000 * 0.0025 + 25915200000000 * 0.002 + 13457300000000 * 0.0015 + 37710000000000 * 0.0015 + 18948800000000 * 0.001 + 42778200000000 * 0.001 + 17158600000000 * 0.0005)</math></p>
<p>근거설명</p>	<p>- 수수료 경감분과 관련하여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3%p(체크카드 0.25%p)를 곱하고, 연매출 3~5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2%p(체크 0.15%p)를 곱하고, 연매출 5~1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5%p(체크 0.1%p)를 곱하고, 연매출 10~30억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0.1%p(체크 0.05%p)를 곱하여 더한 만큼 수수료 수입이 연간 감소</p>